

화장품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

2010.12.02

대한화장품협회
안정림 부회장

화장품산업의 특성

□ '美的 욕구'를 충족시키는 신체적·정신적 활력소

-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아름다움(美)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
- 아름답고, 건강하며 행복이 가득한 삶

□ 첨단산업,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미지 산업

- BT, NT 등의 기술을 이용한 첨단 융합산업
- 상품 컨셉과 브랜드에 의해 가치가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

□ 지속가능한 문화산업

- 화장품산업은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를 창조·공유하는 문화산업

화장품 규제 환경의 변화

□ 화장품산업 환경의 변화

- 제조업자, 수입자 과다
- 시장 규모의 확대
- 양극화

□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

- 안전 요구 심화

□ 국제 화장품 교역의 증대

- FTA
- 수입량의 증대
- 외국의 안전 규제 증대

※ 화장품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

국제 화장품 제도의 변화

□ 법규 제도의 국제 표준화 및 조화

- ICCR : 라벨링, GMP, 나노테크놀러지
- ISO/TC 217 : 미생물시험법, 포장및라벨링, 분석법, 자외선차단시험법, 용어 정의, GMP(ISO 22716)
- EU Directive ⇒ Regulation
- 중국 위생행정허가의 변화

□ 안전성 강화

- 미국, EU, 중국, 아세안 등의 안전성 규제 강화
- 미국 업계 : CIR, Consumer Commitment Code 등 자율 규제 강화

국제 업계의 대응방안(I)

□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

-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
- 제품에 생명력 부여
- 우리의 감사를 고객에 전달
- 모든 고객이 깊은 애정을 느낄 때까지 기다림

※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 고객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것

국내 업계의 대응 방안(Ⅱ)

□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 홍보

- 국민들에게 화장품산업의 중요성 부각
-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

※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

- 업계 자율적인 화장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- 화장품 원료관리의 선진화
- 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제
- 위해관리 요소 발굴
- 화장품 유해의심물질에 대한 단계적 위해평가 실시
-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등 홍보 강화
 - 사용법, 전성분 표시 등에 대한 교육 강화
 - 화장품 바로 알기

국내 업계의 대응 방안(Ⅲ)

□ 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배양

- 품질 경쟁력 제고 (ISO GMP의 도입)
 - 법률 제도의 개선 (화장품법의 개정)
 - 국제 변화 흐름에 대응
 - 기업간의 상호 협력 증대
 - 정부 지원 확대
- ※ 경쟁력 강화로 업계간의 협력 증대

□ 해외마케팅의 강화

- 해외전시회 지원
- 해외시장개척단

국내 업계의 대응 방안(IV)

▣ 국내 업계간의 협력

- 대기업 :

- 중소기업 :

- 벤처기업 :

화장품산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

- 한·미, 한·EU FTA 등에 따라 국내 화장품의 제조·판매 감소 예상
- 국내 화장품시장의 포화 및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경쟁력 약화



화장품 수출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임

정부 지원 내용

- 규제 선진화

 - ※ 화장품법의 개정 등

- R&D 투자 확대

- 수출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

- ISO GMP 구축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

화장품법 개정 추진 상황(Ⅰ)

□ 제조판매업 등의 등록

- 제조판매업자 등의 등록
-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의무화
- 제조판매관리자 지정 및 교육

□ 원료관리 시스템 도입

-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
- 화장품 안전기준 도입
 - 사용금지원료 지정 및 사용 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
 -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 여부 결정 강화
 -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설정

□ 화장품의 기재사항

- 표시기재사항을 1차 포장,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·기재
- 제조판매업자의 주소 및 상호 표시
-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

화장품법 개정 추진 상황(Ⅱ)

□ 표시·광고 범위의 명확화

- '의학적 효능·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'
- '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'으로 개정
- 표시·광고 내용의 실증제 도입

□ 시정명령의 도입

-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 추가

□ 수출용제품의 예외

-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법규의 사용원료기준, 화장품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

□ 화장품산업의 지원

-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·시행 및 재원 마련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

감사합니다.